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1. 9.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70호로 2011년 8월 22일 이재형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최저생계비(1인) : 532,583원 / 차상위계층 소득기준(1인) : 639,100원

## 3.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2,000원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확대 신설함(안 제3조).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보장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월 1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던 것을 “월 12,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타 자치구 보험료 지원사례를 보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천원 이하인 구는 강남구, 월 1만 2천원 이하인 구가 종로, 구로, 동작, 서대문구이며 그 밖에 구에서는 1만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월 평균 90세대로 확대지원시 150세대가 늘어난 약 24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예산액은 약 3,210천원이 증액된 13,2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경우 질병발생 위험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는 것은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4조
- 나. 예산조치 : 있음(2012년도 예산반영)
-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 : 종로구외 23개 자치구
- 라. 참고자료 : 2010~2011년도 보험료 지원현황  
2012년도 예상 지원세대 및 예산액

## 관 련 법 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참고자료]

□ 2011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세대 및 지원금액

2011년도 예산액 : 9,990천원(구비)							
월별	지원대상 계(A+B)		노인세대(A)		장애인세대(B)		비고
	건수	보험료(원)	건수	보험료(원)	건수	보험료(원)	
합계	595	2,977,460	323	1,778,670	272	1,198,790	
1월	81	429,900	42	252,580	39	177,320	
2월	99	507,870	55	310,680	44	197,190	
3월	98	498,850	57	315,260	41	183,590	
4월	90	454,820	50	279,610	40	175,210	
5월	83	414,030	44	235,300	39	178,730	
6월	73	349,770	39	201,230	34	148,540	
7월	71	322,220	36	184,010	35	138,210	

□ 2010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세대 및 지원금액

2010년도 예산액 : 9,990천원(구비)							
구분	지원대상 계(A+B)		노인세대(A)		장애인세대(B)		비고
	건수	보험료(원)	건수	보험료(원)	건수	보험료(원)	
2010년도	1,205	5,616,350	706	3,244,870	499	2,371,480	

□ 2012년도 예상 지원세대 및 지원금액

납부액	지원대상계 (A+B+C+D)		노인 및 장애인(A)예상		한부모 (B)예상		국가유공자 (C)예상		희귀난치성질환 (D)예상		연 간 보험료 지원액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건수	보험료 (천원)	
12,000원 미만 납부	244	1,100	122	563	85	306	15	112	22	119	13,200